

NYC PUBLIC SCHOOLS

RESPECT FOR ALL

뉴욕시 훈육규정에서는 괴롭힘, 협박, 차별, 따돌림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의해 괴롭힘, 차별, 협박, 따돌림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학생,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목격하였거나 알고 있는 모든 학생은 즉시 교직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누군가에게 차별, 괴롭힘, 협박, 따돌림을 당했거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염려되는 점이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가십시오:

뉴욕시 교육청은 괴롭힘이나 협박, 따돌림이 없으며, 실질적이거나 인지되는 인종, 피부색, 민족, 출신국가, 시민권/체류신분, 종교, 신념, 성별, 성적체성, 성표현, 성취향, 장애 또는 체중에 따른 차별이 없는 안전하고 지원적 교육환경을 유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책은 학생 대 학생, 또는 교직원 대 학생간의 이와 같은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나 반드시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폭력,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신체적, 언어적 행위, 골탕먹이기, 비웃기, 고립이나 모욕을 줄 목적으로 또래 집단에서 제외시키는 행위, 괴롭히거나 모욕을 줄 목적으로 비하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등. 이러한 정책은 교육감 규정 및 뉴욕시 표준 중재 및 훈육조치(훈육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괴롭힘, 차별, 따돌림, 협박 등의 행위를 목격한 교직원은 즉시 이러한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중재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훈육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훈육규정 및 교육감 규정 A-443에 의거하여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